

도시철도 건설 국고보조금 보조율 및 지원기준 개선건의사항 보고

2026. 6.

도 시 기 반 시 설 본 부
(도시철도국)

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 목록

도시기반시설본부

☐ 총 1건 건의

☐ 목 록

연 번	건의제목	건의부서
1	도시철도 건설 국고보조금 보조율 및 지원 기준 개선 건의	도시철도설계부

법령 · 제도개선 건의사항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							
1. 도시철도 건설 국고보조금 보조율 및 지원기준 개선 건의 (도시철도설계부, '26.4.17.)	□ 현황 및 문제점 ○ 서울시 도시철도 보조율의 차등 - 현행 도시철도 건설 기준보조율은 서울에만 낮은 보조율이 적용되고 있음 <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1]> <table><tr><th colspan="2">현행</th></tr><tr><th>사업</th><th>기준보조율(%)</th></tr><tr><td rowspan="2">도시철도 건설</td><td>서울: 40</td></tr><tr><td>지방: 60</td></tr></table> ○ 서울시 도시철도 국비 지원 불균형으로 지방비 재정 부담 심화 - 서울시 도시철도는 수도권 전체의 교통 수요를 분담하는 광역교통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, 국비 지원 기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○ 장기계속공사 연차별 매칭비율 적용에 따른 국비 불용발생 - 보조금 교부시 당해연도 기준 매칭 비율 적용으로 당해 매칭 비율을 충족하지 못해 국비가 불용되는 사례 발생	현행		사업	기준보조율(%)	도시철도 건설	서울: 40	지방: 60	
현행									
사업	기준보조율(%)								
도시철도 건설	서울: 40								
	지방: 60								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												
	□ 건의내용 ○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상향 -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을 타·시도와 동일하게 60% 수준으로 상향 건의 <table> <tr> <th colspan="2">현행</th> <th colspan="2">개정안</th> </tr> <tr> <th>사업</th> <th>기준보조율 (%)</th> <th>사업</th> <th>기준보조율 (%)</th> </tr> <tr> <td>도시철도 건설</td> <td>서울: 40 지방: 60</td> <td>도시철도 건설</td> <td>60%</td> </tr> </table> ○ 장기계속사업 예산집행 탄력적 운용을 통한 국비 불용 방지 -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전체사업기간 누계 기준으로 국·지방비 매칭비율을 관리하여 국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보조금 교부기준 완화 □ 개선효과 ○ 서울시 재정부담 완화 및 국가·지자체 간 재정 형평성 확보 ○ 국비 불용 방지 및 사업 추진 안정성 강화 □ 건의결과 ○ 2026년 상반기 규제개선 건의과제 (市 창의규제담당관→행안부) 검토결과, 정책 장려를 위한 보조금 지급 및 지정 행위 등은 행정규제에 해당되지 않아 규제개선 대상에서 제외됨('26.6.2.행안부) □ 향후계획	현행		개정안		사업	기준보조율 (%)	사업	기준보조율 (%)	도시철도 건설	서울: 40 지방: 60	도시철도 건설	60%	
현행		개정안												
사업	기준보조율 (%)	사업	기준보조율 (%)											
도시철도 건설	서울: 40 지방: 60	도시철도 건설	60%											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	○ 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해 교통실과 협의하여 관련부처(국토부, 기획예산처)지속 건의	

관련 규정

【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】

[시행 2026. 1. 5.] [서울특별시조례 제9966호, 2026. 1. 5., 타법개정]

제54조의2(법령 제·개정 건의사항의 보고)

- ① 시장 및 교육감은 시민의 권리·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법령(「행정기본법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건의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그 의견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(약칭: 보조금법) 】

[시행 2026. 6. 2.] [법률 제21751호, 2026. 6. 2., 일부개정]

기획예산처 (예산기준과), 044-214-2354

제9조(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)

- ①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, 경비의 종목,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
 -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 (이하 “기준보조율”이라 한다)
-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1. 28.>
[전문개정 2011. 7. 25.]

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(약칭: 보조금법 시행령) 】

[시행 2026. 1. 2.] [대통령령 제35948호, 2025. 12. 30., 타법개정]

기획예산처 (예산기준과), 044-214-2354

제4조(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)

-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(이하 “기준보조율”이라 한다)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.
- ②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, 지방비 부담액,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,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. <개정 2025. 12. 30.>
[전문개정 2011. 10. 26.]

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25. 12. 31.>

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(제4조제1항 본문 관련)

사업	기준보조율(%)	비고
1. 일반여권 발급	100	
2. 119구조장비 확충	50	
3.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·장비 확충	30	
4. 재해 위험지역 정비	50	
5. 삭제 <2019. 12. 24.>		
6. 삭제 <2019. 12. 24.>		
7. 배수 개선(생략)	100	
46. 도시철도 건설	서울: 40 지방: 60	민간투자 경량전철건설사업은 제외